



□ 관련근거

- 화재예방·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(과태료)
-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(소방훈련과 교육)

□ 소방훈련 및 교육대상

-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(적용 범위)
 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2. 국공립학교
 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  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

□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방법

-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(소방훈련과 교육)
  -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**연 2회 이상 소방 훈련 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**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 이거나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**[ 공공기관 소방훈련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 ]**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(과태료)제1항제9호  
 ⇒ [200만원 이하 과태료]

□ 합동소방훈련 순서도



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서교119안전센터 훈련 담당자(02-3143-21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